#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12. 13.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23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력에 대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 함.
- 나. 주요내용
  - 정원 조정 내역

- 총 정 원: 1,489명 → 1,493명(증 4명)

- 일반직 계: 1.483명 → 1.488명(증 5명)

· 6급 이하: 1,405명 → 1,411명(증 6명)

· 전문경력관: 2명 → 1명(감 1명)

- 별정직 계: 5명 → 4명(감 1명)

○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2)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개정전	비 율	23%이내	33.5%이내	33.5%이내	10%이상	
개정후	비 율	25%이내	40%이내	25%이내	10%	6이상

####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3)

기관별			개	정전			개정후				
직		총 계	본청	구의회	보 건 소	동	총 계	본청	구의회	보 건 소	동
	총계	1,489	1,489			1,493	1,493				
	정무직 1				1		1	1			
1	일반직 계 1,483 1,483			1,488	1,488						
	3급	1	1	-	_	_	1	1	-	-	-
01	4급	9	7	1	1	_	9	7	1	1	_
일 반 직	5급	66	33	2	13	18	66	33	2	13	18
~	6급 이하	1,405		1,4	05		1,411	1,411			
	전문경력관	2		2		1	1				
ļ	<b>별정직 계</b> 5 5			4	4						
6≣	급 상당 이하	5			5		4	4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증원과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업무의 정원 확보 를 위한 전문경력관 감원 조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O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명 증원하고 총수 1,489명을 1,493명으로 증원함.
- 안 별표2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에서 5급 및 6급상당의 비율을 높이고 7급상당의 비율은 낮게 조정함.
- 안 별표3은 직급별 정원표에 관한 사항으로 정원 총수를 4명 증원하고 세부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 6명 증원, 전문경력관 1명 및 별정직 1명 등을 감원함.

####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직 및 별정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충원을 위한 개정으로 정원 증가에 관하여는, 2023년 우리 구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총액은 1,409억 원이고 2023년 우리구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392억 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4명 인건비는 연간 1억 9,876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 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89 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력에 대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내역: 1,489명 → 1,493명(증 4명)

나.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별표2]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개정전	비 율	23%이내	33.5%이내	33.5%이내	10%	이상
개정후	비 율	25%이내	40%이내	25%이내	10%	이상

#### 다. 직급별 정원표[별표3]

7.2世			개	정전			개정후				
직급		총계	본청	구이회	보건소	동	총 계	본청	구이회	보 건 소	동
	총계	1,489		1,48	89		1,493		1,4	93	
	정무직	1	1			1	1				
f	일반직 계	1,483	1,483		1,488	1,488					
	3급	1	1	_	_	_	1	1	-	_	_
01	4급	9	7	1	1	_	9	7	1	1	_
일 반 직	5급	66	33	2	13	18	66	33	2	13	18
4	6급 이하	1,405		1,4	05		1,411	1,411			
	전문경력관	2		2		1	1				
1	별정직 계	5	5			4	4				
6≣	급 상당 이하	5			5		4			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보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시행

1) 비용추계 기준: 일반직 인건비

- 채용인원: 4명

- 추계기간: 12개월('23.01~12.)

- 비용추계내역: 기본급+직급보조비+국민건강보험금+연금부담금+수당

2)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198,764	
기본급(봉급)	101,314	7급 3호봉 기준
직급보조비	7,440	월 직급보조비: 7급 155천원
국민건강보험금	5,680	보수월액의 3.545% 부담
연금부담금 등	32,856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수 당	51,474	- 가족수당 : 1,92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30,452천원 - 정액급식비 : 6,720천원 - 명절휴가비 : 10,131천원 - 연가보상비 : 2,251천원

####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 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89명"을 "1,4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2 명"을 "36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40% 이내	25% 이내	10%	이상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작	기관별 7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93		1,4	9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88		1,48	38		
	3급	1	1	_	-	_	
01	4급	9	7	1	1	_	
일반직	5급	66	33	2	13	18	
식	6급 이하	1,411	1,411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제2조(정원의 총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489명</u>	<u>1,493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32명</u>	2 <u>36명</u>
[별표 2]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u>직급별 정원책정기준</u> (제3조 관련)	<u>직급별 정원책정기준</u> (제3조 관련)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u>23%</u> <u>33.5%</u> <u>33.5%</u> <u>이내</u> 10% 이상	비 율 <u>25%</u> <u>40%</u> <u>25%</u> <u>이내</u> 10% 이상

#### [별표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_ 기관별			フかわ			
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489</u>		<u>1</u> ,	<u>489</u>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1,483</u>		1,	<u>483</u>		
3급	1	1				
4급	9	7	1	1		
5급	66	33	2	13	18	
6급 이하 소계	1,405		1,	405		
전문 경력관 소계	<u>2</u>	2				
별정직 계	<u>5</u>			<u>5</u>		
6급 상당 이하	<u>5</u>			<u>5</u>		
	총 계 정무직 의반직 계 3급 4급 5급 이하 전문자계 절정직 계	총계 총계 1,489 청무직 1 1,483 3급 1 4급 9 5급 66 6급 이하 1,405 전문 경력관 소계 5	총계 본청   본청   총계 본청   총계 보청   1,489   정무직 1   1,483   3급 1 1 1   1   4급 9 7   5급 66 33   6급 이하 소계 1,405   전문 경력관 소계 2   설정직계 5	총계 본청 자꾸국 총계 본청 자꾸국 총계 1,489 1, 정무직 1 1,483 1, 3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총계 본청 자꾸쿡 보건소   총계 1,489 1,489   정무직 1 1   일반직계 1,483 1,483   3급 1 1 0   4급 9 7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1,405 1,405   전문 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계 5 5	

#### [별표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	기관별 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	
	총 계	<u>1,493</u>		<u>1,</u>	<u>493</u>		
	정무직	1			1		
C	일반직 계	1,488		1,	488		
	3급	1	1				
일	4급	9	7	1	1		
년 반	5급	66	33	2	13	18	
직	6급 이하 소계	1,411		1,	411		
	전문 경력관 소계	1	1				
ŀ	별정직 계	<u>4</u>			4		
	6급 상당 이하	<u>4</u>			4		